

근로계약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용]

사용자 (갑)	회 사 명		근로자 (을)	근로자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소 재 지			주 소	

상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 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비워 둔다.

제 2 조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숙련도 등 업무 적격성 및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복무규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고객과 분쟁 및 민원 발생 등이 있는 경우 “갑”은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 제2조 동의확인 : _____ [서명]

제 3 조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

- “을”의 근로 장소는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이 지정한 현장으로 한다.
- “을”의 담당업무는 _____ 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을”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수성 및 직종별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스케줄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비고

2. 휴게시간은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다만, 연장근로는 “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4. “을”이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임신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근로는 별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위 3., 4.항 동의확인 : _____ [서명]

제 5 조【휴일】

1. 주휴일(노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1주일 중 1일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2. 1주일 중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첫번째 휴무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사전에 대체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대체된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 6 조【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임금】

1. “을”의 월 임금은 _____ 원 (₩ _____)으로 한다.

2. 전항의 월 임금은 월 평균 고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반 법정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구분	월 임금	산정시간	산정식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합계			

3. 월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위 산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정산·지급한다.
5.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____일부터 다음 달 ____일까지로 하며, 지급 시기는 익월 ____일로 한다.
6. 임금은 “을”이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임금 지급일 익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의 실 지급액은 보수총액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결근·지각·조퇴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8 조【개인정보】

1.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서의 작성 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3년이 되는 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급여관리 및 인사 노무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9 조【퇴사 및 금품청산】

1. “을”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제1항은 “을”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을”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민법 제660조).
3. 임금·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 10 조【 기밀유지 】

1. “을”은 재직 중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고객·거래처 정보, 조리법·매뉴얼 등 업무상 비밀을 “갑”의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2. “을”은 “갑”의 물품·시설 및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재직 중 “갑”의 사전 승낙 없이 “갑”의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러한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근로계약의 해지 】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불응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이거나 월 5일 이상인 경우
 3. 회사 재산을 절취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사외로 반출한 경우
 4.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 수행의 조건이 되는 자격증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장기간 정지된 경우
 6. 채용조건이 된 학력·경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7. “갑”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한 경우
 8.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갑”이 “을”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같은 법 제23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 12 조【 손해배상 】

1.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이 아니며(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은 “갑”이 입증한다.
3. “을”은 퇴사 시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 13 조【 준용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갑”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관련법 등에서 적용 제외되는 부분은 이에 따른다.

제 14 조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사용자(갑)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을)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